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7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평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 점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며 구직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

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9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하려 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② (생략)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u>
<u>③ ~ ⑬</u> (생략)	<u>④ ~ ⑰</u> (현행 제3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u>⑰ 제10항의 사무처장 및 제11항의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제16항의 委囑幹事는 당해 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u>	<u>⑱ 제11항-----제12항-----제17항-----</u> ----- -----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총장에게 처의 사무 관리,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음(법 제15조 제3항및제1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나(법 제4조제1항),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법 제15조제12항),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있음.¹⁾

그런데,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다수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같은 해 6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채용·조직·복무 분야에서 총 37건의 제도개선 및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이 중 9건(17인)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2025년 2월 공개하였음.²⁾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을 징계처분하였다고 밝혔음.³⁾

1) ‘인사청문제도’란 인사청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관여를 실질화함으로써 도덕적이고 능력있는 적격의 공직자를 뽑기 위한 제도로 정의되며, 현재 총 66개 직위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박규찬, “인사청문제도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2024.6. p.6., p.23.

2)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2025.2.27. 조선일보, “”우린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 구제불능 선관위“, 2025.2.28.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8명 임용취소 결정”, 2025.4.30.

《 직무감찰 지적사항 현황 및 주요 문제점 》

(단위: 건, 명)

지적사항 현황					
구분	징계(인원수)	주의(인원수)	통보		
			일반	인사자료(인원수) ⁴⁾	시정완료
채용분야	7(14)	8(10)	3	4(8)	-
조직분야	-	1	1	-	-
복무분야	2(3)	5	4	1(2)	15)
합계	9(17)	14(10)	8	5(8) ⁶⁾	1

분야별 주요 문제점	
구분	문제내용
채용분야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조직적 특혜 제공(채용, 전보, 관사제공 등)
	면접 점수 임의 작성 및 변경, 관련 증거 조작 및 인멸
	특정인 채용 청탁 및 비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 부당 실시
	소속기관의 전출동의 없는 특정인 임의 채용
	시·도선관위의 친인척 특혜 정황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소홀
	응시요건 미충족자 채용 등 경력경쟁채용 업무 부적정
조직분야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1급 직위 신설 및 법정 임기를 무시한 자리 나눠먹기식 운영
	복수직급 및 별도정원 과다 운용, 선관위법 위반 보직 부여
복무분야	장기간·반복적 무단결근, 허위 병가 사용 등 복무 태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목적 연수휴직 부당 승인, 범죄사건 온정적 처리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소홀
	교육실적 미달 직원 승진 임용 및 관련 사실 은폐

*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25.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 4) 통보 유형 중 ‘인사자료’는 해당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함.
 5) 무단결근·지각·조퇴로 과다 지급받은 봉급 등 금액 15,244,220원을 환수한 사실을 통보한 사례임.
 6) 채용 및 복무분야에서 2명 중복됨.

이와 같은 채용 비리 현황과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⁷⁾

한편, 해당 직무감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등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직무감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⁸⁾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음.⁹⁾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하려 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7) 데일리안, “국민 10명 중 7명 ‘선관위 외부감사 필요하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2025.3.20.

8) 헌법재판소, 2025.2.27., 2023헌라5.

9) “다만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영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며, 그 밖에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심판제도도 청구인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앞의 판결.

이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사무총장에 임명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일한 장관급 인사라도 국회와 감사원의 사무총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등 다른 헌법기관 유사 직위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¹⁰⁾

《 헌법기관 사무총장 임명 관련 현황 》

구분	사무총장 (또는 상응 직위)	임명권자	국회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 의결)	×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장 (본회의 승인)	×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 (감사위원회 의결)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대법관 중 보임)	△ ¹¹⁾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장 (재판관회의 의결)	×

* 선거관리위원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의 규정을 토대로 재가공

10)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내부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과 비중이 차이가 있다고 볼 소지는 있음.

11)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대법관 중에서 보하는데(법원조직법 제68조), 대법관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대한민국헌법 제104조제2항 및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 타 헌법기관 유사 직위 임명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인사청문이 지체될 경우 선거관리 업무 공백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